

제 도시기반과 - 3호

행정대집행 고 고 서

성명(단체명) : 미 상

주소 : 미 상

소 재 지: 가좌동 7 부근 도로

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부근 도로 상에 적치물(돌)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적치물로서 「도로법」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및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를 위반하였습니다.

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물이 도시미관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20년 4월 16일 까지 반드시 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「도로법」 제 73조(원상회복)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 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가좌동 7 도로 부근	돌	2개	철거

2020년 3월 31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